

전산보고 지원사업 참여 석유사업자 의무사항 이행각서

_____ { 주유소
 일반판매소 } (이하 '참여대상 사업자')는 석유제품 거래상황기록부 전산보고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산업통상자원부(한국석유관리원)로부터 중계소프트웨어(이하 '미들웨어') 설치(비용)를 지원받으며, 참여대상 사업자의 운영에 관한 이행각서(이하 '각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한다.

제1조(목적) 본 각서는 전산보고 참여를 위해 중계소프트웨어 설치를 지원받는 참여대상 사업자의 사후관리(의무이행 사항 등)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기준) 참여대상 사업자에게 지원되는 미들웨어 설치에 관한 모든 사항은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전산보고 등에 관한 지침(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지침 이외의 사항은 한국석유관리원(이하 '관리원') 유권해석에 따른다.

제3조(허위설치 금지) 참여대상 사업자는 중계소프트웨어 설치와 관련하여 시공업체에게 부적정한 시공을 요구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사업자는 중계소프트웨어 설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4조(설치 확인협조) 참여대상 사업자는 중계소프트웨어 설치 후 설치내역에 대한 세부설명 및 자료제공 등 관리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의무이행 사항) 중계소프트웨어 설치지원을 받은 참여대상 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의무적으로 이행한다.

1. 전산보고를 2년간 유지하여야 한다.
2. 지위승계가 있는 경우 새로운 승계자에게 전산보고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3. 중계소프트웨어 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중계소프트웨어 운영현황에 대한 관리원의 지도 및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라이선스 회수) 참여대상 사업자 또는 승계인이 제5조를 위반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폐업하는 경우 관리원은 주유소 또는 일반판매소에 지원한 중계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회수할 수 있다.

제7조(유효기간) 이 각서의 유효기간은 중계소프트웨어 설치지원을 받은 날(관리원에서 설치 확인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2018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인)